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교육부

수 신 수신처참조

(경유)

제 목 「연구시설.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」개정안 등 알림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 알림

1. 관련 :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조의2

2. 「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」 개정안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0.4.2.(목) 까지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

3. 아울러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 검토 및 안내법령 등 현황 >

구분	법령 등	주 요 내 용	비고
1	「연구시설 · 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」	? 연구시설・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구의 지정, 내부 운영규정 마련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	
2	「측량대가의 기준」	? 신기술 · 신공법 등 측량 시장변화에 따라 측량대가의 산정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직접인건비에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	
3	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	?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・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산입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,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・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?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완화하고, 발주자가 산출한 품질관리비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	개정 알림

붙임 : 제 · 개정안 및 검토의견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처 : 국립특수학교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시도교육청

주무관 **정원일** 교육시설과대결03/26
장 **정영린**

협조자

시행 교육시설과-3082 (2020-03-26) 접수 산학연구팀(천안)-171(접수일자:2020.03.27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(어진동, 교육부)14동 / www.moe.go.kr
전화 044-203-6301 전송044-203-6305 / cwi396713@korea.kr / 공개

결재